

사방지 변경지정 고시

「사방사업법」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「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」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0년 사방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 합니다.

2020년 3월 5일

함 안 군 수



1. 사방지 지정내역 : 함안군 여항면 외암리 18외 28필지
※ 세부내역 붙임 지정내역 참조
2. 지정사유 : 토석류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2020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
3. 사방지 지형도면 : 붙임 도면 참조
4.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, 기타 문의사항은 함안군 산림녹지과(055-580-4554) 또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(055-254-391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사방지 지정조서 및 지정구역도 각 1부. 끝.